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2. 13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11월 9일

나. 발 의 자: 우경란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3년 11월 14일

라. 상정일자: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

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(2023. 11. 27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우경란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영등포구민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심폐소생을 행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적시에 받을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을 통해 구민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구민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의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- 본 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민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,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한 구청장의 책무에서 대상의 제한 없이 영등포구민 누구나 적기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 - 안 제4조(연도별 교육 계획의 수립)는 안 제3조의 내용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의 수립 시 대상·내용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추가함.
 - 안 제5조(구민 등의 교육)제1항 및 제3항은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 상의 표현을 정비하고, 안 제5조(구민 등의 교육)제2항제2호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“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, 관내 학교 교직원”을 추가한 것이며, 안 제5조(구민 등의 교육)제2항제3호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 중 “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”를 “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책임자”로 변경함. 이는 응급장비 관리 책임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8조의3(응급장비의 관리) 규정을 반영하여 변경한 것임. 안 제5조의2(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)는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, 인력배치와 관련하여 「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」에 따르도록 명시함.
- 검토 결과
 - 심폐기능 정지 후 4분이 경과되면 뇌세포 손상이 시작되며 10분이 경과되면 심폐순환이 회복되더라도 뇌의 생명유지 기능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됨. 그래서 심정지 최초 발견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매우 중요하며 심폐소생술을 즉시 실시할 경우 소생 가능성이 2~3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.
 - 본 안건은 심폐소생술 우선 교육 대상자를 확대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, 심정지 환자의 생명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우경란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3. 11. .

발 의 자: 우경란, 신흥식, 유승용
임헌호 의원(4인)

1. 제안이유

영등포구민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심폐소생을 행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적시에 받을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을 통해 구민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구민 등의 교육(안 제5조)

나.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(안 제5조의2)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3. 11. 09. ~ 11. 14.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”을 “심폐소생술”로, “교육을”을 “적기에 교육을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 중 “기본 방향”을 “기본방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·내용·방법 등에 관한 사항

제5조제1항 중 “심폐소생술”을 “구청장은 심폐소생술”로, “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”을 “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운영자, 관내 초·중·고등학생”을 “운영자, 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, 관내 학교 교직원 및 학생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”를 “자동심장충격기(AED) 관리책임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)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「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」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(생략)	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연도별 교육 계획의 수립)

① (생략)

②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

<신설>

2.·3. (생략)

제5조(구민 등의 교육)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자원봉사자,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, 관내 초·중·고등학생

3.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

② ----- 심폐소생술 -----

----- 적기에 교육 -----.

제4조(연도별 교육 계획의 수립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
1. ----- 기본방향

2.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·내용·방법 등에 관한 사항

3.·4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

제5조(구민 등의 교육)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--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-----
-----.

② 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운영자, 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, 관내 학교 교직원 및 학생

3. 자동심장충격기(AED) 관리

설의 관리자 및 통·반장

4. 5. (생 략)

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
교육기관이 심폐소생술 교육을
대행하 게 할 수 있다.

<신 설>

책임자 -----

4. 5. (현행과 같음)

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
는 경우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
관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.

제5조의2(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
영)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원활
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
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
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교육장을 운영하는
경우에는 「국민 응급처치 교육
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
시」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
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
을 배치하여야 한다.